

보 도 자 료

발 신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지역학부모회]
수 신	각 언론사 교육 담당 기자
문 의	asunaro@asunaro.or.kr , 010-2840-3328 (공현)
일 시	2015년 2월 11일 수요일

1. 안녕하십니까?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우리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는 수원 시 영신중학교에서 상습적 일상적으로 체벌 등 학생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사건 해결과 학생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촉구를 위하여 언론보도를 통한 공론화를 부탁드립니다.
2. 우리의 조사 결과로는, 영신중학교에서 일어난 체벌들은 엎드려뺨쳐, 오리걸음, 의자 들고 서있기 등 신체에 고통을 주려는 목적의 무리한 동작을 강요하는 체벌과, 도구와 손으로 학생들의 발을 때리고 뺨을 때리는 등의 체벌 등 여러 종류였으며 체벌을 가한 교사들 역시 다수였습니다.
3. 체벌 문제를 제보한 학생은 작년 10월, 학교장 앞으로 체벌 사실을 알리고 사건 해결을 요청하는 익명 편지를 우편으로 보낸 바 있으나 학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사건을 교육청에 진정하고 공론화하는 것을 인권단체에 부탁해왔습니다.
4.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에 진정을 제출하는 한편, 영신중학교로도 의견서를 보내 사건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영신중학교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을 받기를 원하며, 교육청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을 만큼 성실한 조사와 해결을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신중에서 체벌 등의 학생인권침해가 근절되고, 확실한 예방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5. 체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등을 위반하는 명백히 위법한 폭력이며, 학생인권침해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5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나 현재도 이처럼 체벌이 공공연하게 다수의 교사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장시간 구제되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던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시스템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가 결코 학생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역이 아니며, 학생인권의 보장과 개선을 위해서는 더 면밀한 계획 및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6.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 경기도교육청 진정 서류, 영신중학교로 보낸 의견서

진정.건의 및 질의

(일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수원시 영신중학교 상습 체벌 진정

민원인(실명기재): 유윤중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전화번호 : 010-2840-3328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65번길 15-14 화인빌A 207호

민원내용기재

우리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는, 재학생으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소재 영신중학교에서 일상적, 상습적으로 체벌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체벌을 비롯하여 영신중학교의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제보 받은 체벌 및 언어폭력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모두 2014년 중에 일어난 사례들입니다.

- 1, 2학년 체육 교사가 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일상적으로 운동장에서 엎드려뺨쳐, 귀 잡고 오리걸음 등의 체벌을 가함.
- 1학년 사회 교사가 지각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복도에서 귀 잡고 오리걸음을 시킨 적이 있음.
- 3학년 미술 교사는 자리를 바꿨다는 이유로 반 학생들 전체를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하는 체벌을 함.
- 1학년 과학 교사가 의자를 들고 서있게 하거나 엎드려뺨쳐를 시킴. 특정 학생들에게 이런 체벌을 많이 함.
- 2014년 3월, 1학년 과학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을 의자 위에 올라가게 한 뒤 긴 막대기로 발을 때리는 체벌을 함.
- 3학년 수학 교사가 학생들의 따귀를 때린 일이 있음. 이 교사는 벌이 아닌데도 단원마다 '깜지'를 쓰게 함. 또한 학생들이 떠들면 화가 나서 써오게 시키기도 함.
- 과학부장 교사가 나무 막대기에 검은 테이프 감아놓은 걸 들고 다니면서 '발마사지' 라고 하며 발을 때리는 체벌을 함.

● 1학년 일본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개새끼야”, “지랄하지 마라” 등의 언어폭력을 가함.

현재 우리가 증언을 확보한 사례들만 이정도이며, 그밖에도 다수의 교사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체벌이 일어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교사는 “나는 학생인권조례 신경 안 쓰고 신고해도 상관 없이 때릴 거다.”라고 학생들을 공공연히 협박을 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제보한 학생은 작년 학교장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 체벌 문제 해결을 건의하기도 했으나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기에 교육청에 진정을 내고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체벌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등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명백한 폭행이고 인권침해이자 아동학대행위이기도 합니다. 모욕을 가하는 등의 언어폭력 역시 명백한 학생인권침해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깜지’ 역시 적절한 교육 방식인지 의문스러우며, 그것이 학생들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종의 체벌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5년째가 되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노골적인 학생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조속히 조사하여 체벌 및 학생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영신중학교의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여 학생인권침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일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하길 바랍니다.

제보한 학생은 신원의 노출을 우려하여 인권단체가 대신 진정해줄 것을 부탁했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학생들의 진술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첨부2)

수신	경기도 수원 영신중학교 학교장
발신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담당	공헌 (010-2840-3328)
제목	체벌 등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일시	2015년 2월 11일 수요일

체벌 등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는 경기도 지역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 우리는 귀교의 교사들 다수가 학생들에게 일상적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등 학생인권을 침해해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에 관해 경기도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귀교에도 역시 학생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우리가 제보 받고 증언을 확보한 체벌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체육교사, 1학년 사회 교사, 과학 교사 등이 '엎드려뺨쳐', '오리걸음', '무릎 꿇고 손 들기', '의자 들고 서있기' 등 학생들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동작을 강요하는 체벌을 가함.
 - ▶ 1학년, 3학년 교사 등이 학생들의 발을 막대기로 때리는 체벌을 가함.
 - ▶ 3학년 수학 교사가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체벌을 가함.
 - ▶ 그밖에 학생들에 대한 체벌 위협이나, 욕설 등 언어폭력 사례.
- 이러한 체벌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불법한 것이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일종의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귀교에서 다수 교사들이 이처럼 공공연하게 체벌을 가하고 있던 사실을 학교장 등 학교관리자들이 알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또한 그동안 체벌을 포함하여 학생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2월 17일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 우리는 귀교가 ▲ 체벌 사건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밝힐 것, ▲ 학교 공식 명의로 체벌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할 것, ▲ 체벌 등을 한 교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합당한 처벌을 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학교장 등 관리자 역시 만일 체벌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해왔다면 이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체벌을 모르고 있었다면 관리 소홀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교육청과는 별개로 귀교의 신속하고도 책임 있는 조치를 바랍니다. 끝.